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유럽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제도**

[www.kipo.go.kr](http://www.kipo.go.kr)



특허청  
특허제도과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유럽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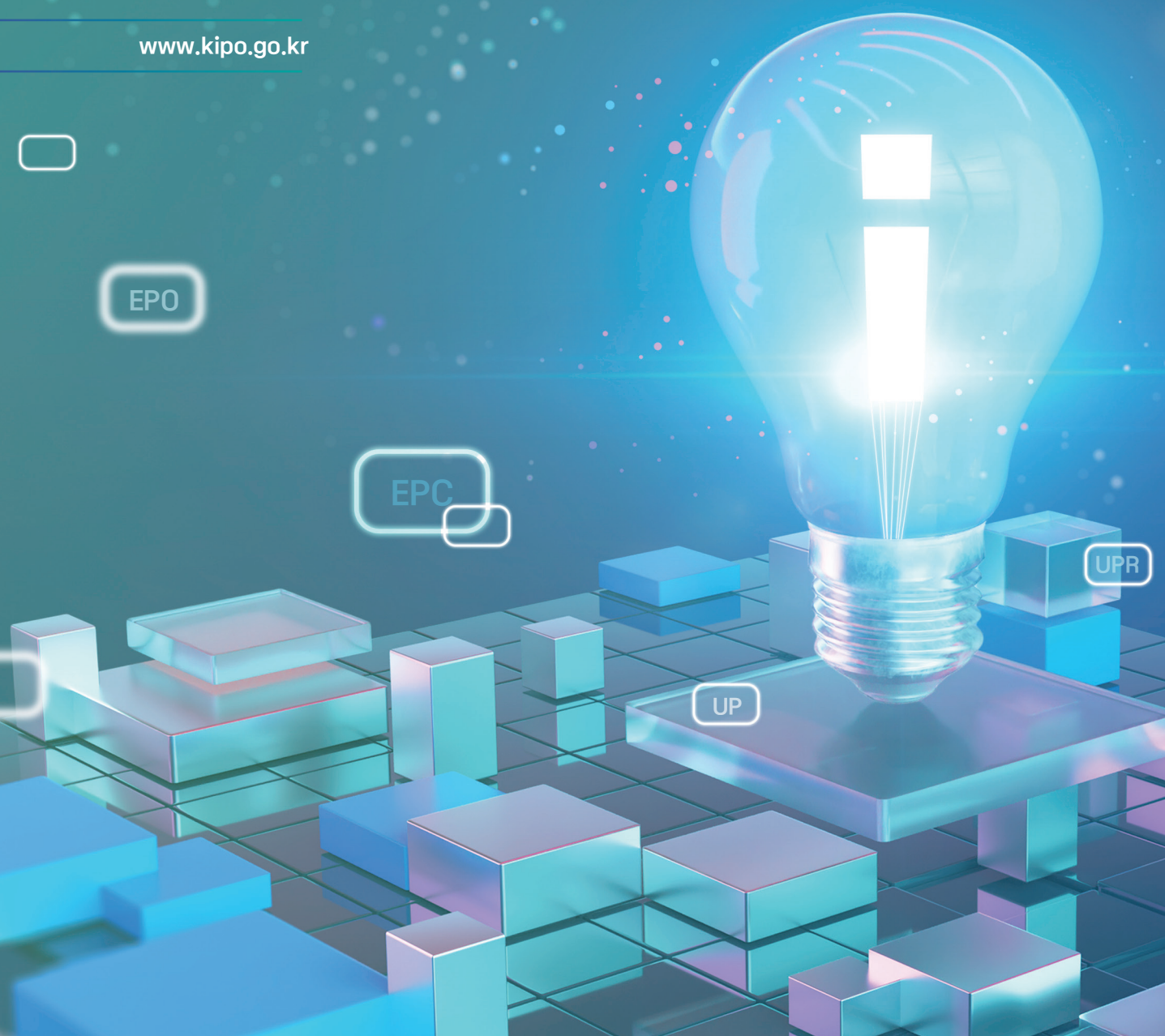
[www.kipo.go.kr](http://www.kipo.go.kr)

EPO

EPC

UPR

UP



## 약어

유럽특허청	EPO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조약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단일특허	UP (Unitary Patent)
단일특허규칙	UPR (UP Regulation)
단일특허가이드	UPG (UP Guide)
통합특허법원	UPC (Unified Patent Court)
통합특허법원협정	UPCA (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

UPG

UPCA

# EU 단일특허

## (UP : Unitary Patent)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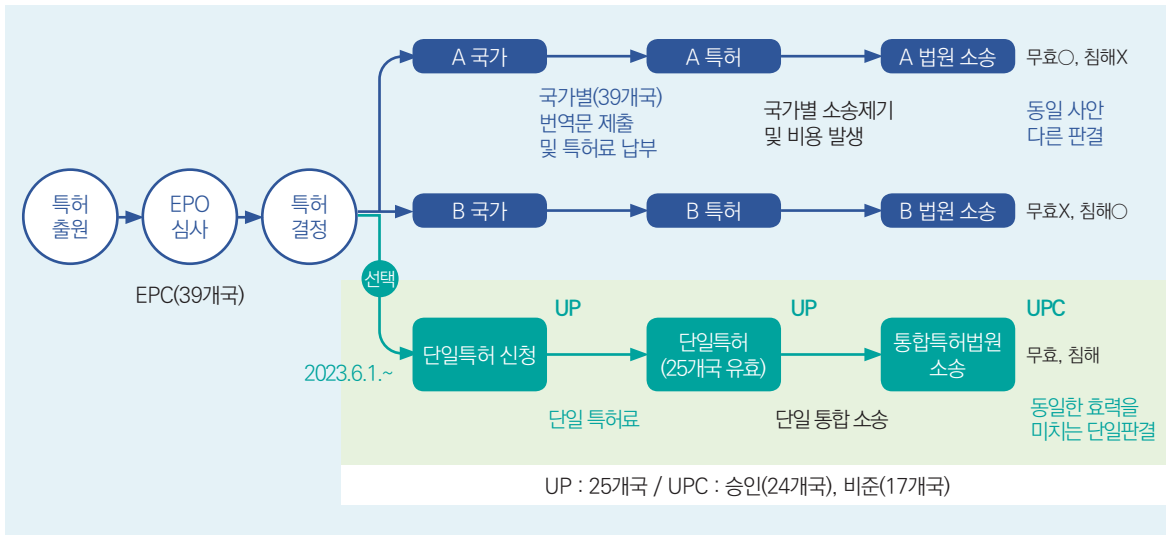
### 1 EU 단일특허 제도 개요

(<https://www.epo.org/applying/european/unitary/unitary-patent.html>)



EU 단일특허 제도 개요

- 가. 단일특허 : 개별국 등록절차 없이 단 하나의 특허로 단일특허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 발생 → 권리 행사·이전·소멸 등에 대해서도 하나의 권리로 취급
  - 기존 유럽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심사, 특허결정 절차는 EPO에서 진행



#### 나. 단일특허 참여 국가(UPG §8 및 §24, 2023.6.1. 기준)

- EU 27개국 중 25개국이 단일특허 참여 서명(스페인, 크로아티아 제외)
- 다만, 현재는 UPC 비준국 17개국에서만 단일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 활용효력이 적용

### 2 기존 유럽특허(EPC)와 EU 단일특허(UP) 제도 비교(EPC > UP > UPC)

- 가. UP, UPC 발효 후에도 출원인은 기존 유럽특허와 단일특허 중 하나 선택 가능
- 나. 기존 유럽특허는 국가별로 등록절차, 단일특허는 EPO에서 1회의 등록절차를 밟음

## 기존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제도 비교

구분	기존 유럽특허	단일특허
적용국가	• EPC 계약국 39개국	• EU 내 25개국(단, UPC 효력은 17개국)
출원·심사	• EPO에서 EPC에 따라 출원, 심사 및 등록결정까지 동일하게 수행	
등록절차	• 국가별로 등록료 납부 • 국가별로 지정된 언어로 번역문 제출	• EPO에만 단일특허 등록료 납부 • EPO 공식언어(영어, 불어, 독어) 중 1개로 제출 → 단일특허효력 신청과 동시에 번역문 제출 의무
특허 효력	• 진입한 국가에서만 효력	• 회원국 전체(25개국)에서 효력 → 회원국 전체에서만 권리 이전·무효화 가능 (단, 실시권 설정은 일부 국가에서도 가능)
비용 효율성	• 국가별 언어 번역문, 등록료, 관련 대리인 비용 필요	• EPO에서 단일 절차로 특허등록 진행 • EU 4개국 등록료 정도로 단일특허등록 가능



단일특허 신청 절차

### 3 단일특허 신청 절차

<https://www.epo.org/applying/european/unitary/unitary-patent/unitary-patent-guide.html>



단일특허 신청 절차  
관련한 교육자료 링크

- ① **단일특허 효력 신청(UPR §6①)** : 유럽특허공보에 해당 유럽특허 허여 사실이 공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단일특허신청서를 유럽특허청에 제출(EPO UP7000 form 활용)  
 ※ 단일특허 신청 절차 관련한 교육자료 링크(<https://e-courses.epo.org/course/view.php?id=296>)
- ② **기존 유럽특허는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청구항에 대해 허여된 경우에만 단일효력을 등록시킬 수 있음(UPR §5②)**
- ③ **언어** :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중 1개로** 출원 → EPO 특허결정 전까지 3개 언어에 대한 청구항 번역 → 최장 12년(6년+6년)의 **전환기간 동안 번역문 제출 의무**(영어→불어 or 독어 or 네덜란드어 or 이탈리아어, 불어독어→영어) : **번역문은 상세한 설명만 제출**하고 정보제공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
- ④ **비용** : 평균 10년동안 단일특허 유지 비용: 종전의 1/6 수준인 5,000유로  
 - 소기업은 모든 UPC 수수료를 40%, EU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번역비용 500유로 보상  
 ※ 단일특허 수수료 정보 링크(<https://new.epo.org/en/legal/official-journal/2022/04/a42.html>)
- ⑤ **단일특허 등록(UPR §16①)** : **단일특허 등록부(UPP Register)**는 기존 유럽특허 등록부(<https://register.epo.org/regviewer>)에 별도 세션으로 마련[EP1234567C0(단일특허를 의미)]
- ⑥ **독일, 프랑스**에서는 단일특허를 등록받았더라도 해당국 특허청에 별개의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음 (**Double Protection**) - 해당국 법에 따라 도입 가능(EU 단일특허규정 1257/2012 §26)



단일특허 수수료  
정보 링크

# 유럽 통합특허법원

## (UPC : Unified Patent Court) 제도

**1** EU 통합특허법원 설립 현황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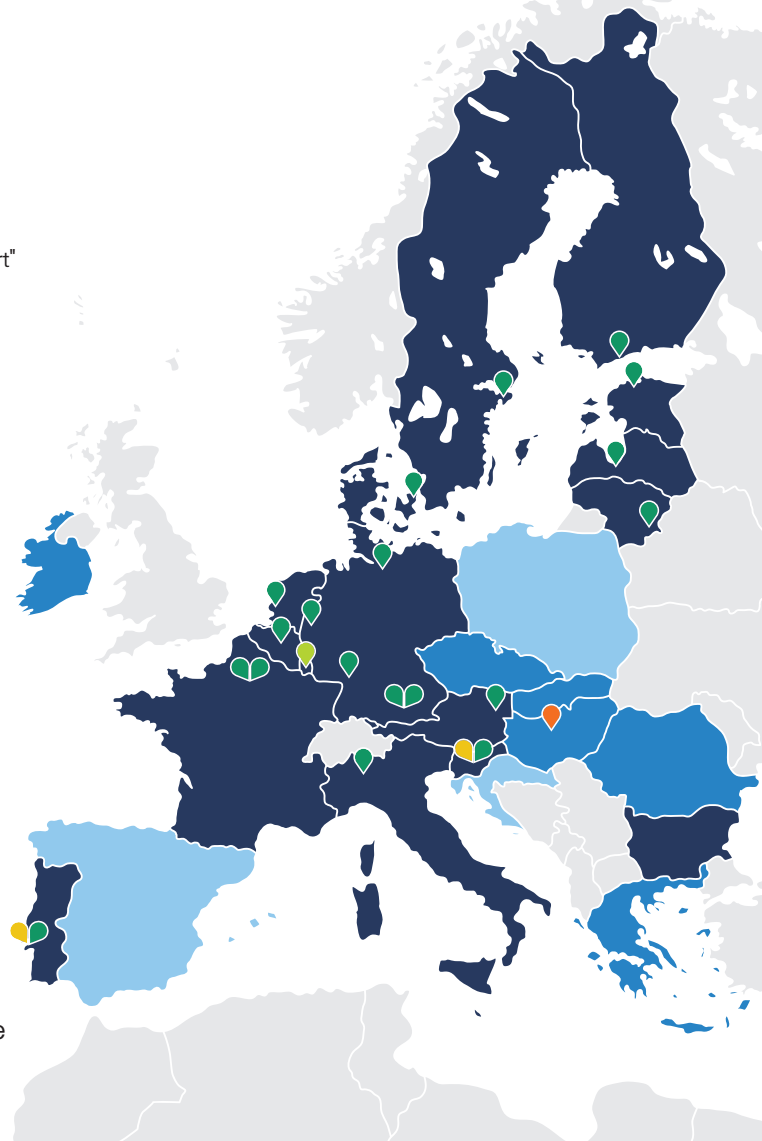
### Locations Map

- UPCA in force (Expected)\*
- UPCA Signatory States
- Other EU Member States

\* UPCA stands for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 Show location types

- Court of Appeal
- Court of First Instance
- Training Centre
- Patent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Select a Member State below to learn more

- Austria
- Belgium
- Bulgaria
- Denmark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Italy
- Latvia
- Lithuania
- Luxembourg
- Malta
- Netherlands
- Portugal
- Slovenia
- Sweden
- Cyprus
- Czech Republic
- Greece
- Hungary
- Ireland
- Romania
- Slovakia
- Croatia
- Poland
- Spain

Select a Location below to learn more

- Luxembourg (LU)
- Paris (FR)/C
- Munich (DE)/C
- Riga (LV)/R
- Stockholm (SE)/R
- Tallinn (EE)/R
- Vilnius (LT)/R
- Brussels (BE)/L
- Copenhagen (DK)/L
- Düsseldorf (DE)/L
- Hamburg (DE)/L
- Helsinki (FI)/L
- Lisbon (PT)/L
- Ljubljana (SI)/L
- Mannheim (DE)/L
- Milan (IT)/L
- Munich (DE)/L
- Paris (FR)/L
- The Hague (NL)/L
- Vienna (AT)/L
- Lisbon (PT)
- Ljubljana (SI)
- Budapest (HU)

C: Central division L: Local division R: Regional Division

- EU 27개국
  - UPCA 서명 24개국
  - UPCA 비준 17개국
- 항소법원 (등록처) 1개(룩셈부르크)
  - 중앙법원 2개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 지역법원 13개
  - 특허조정-중재 센터 2개
- 광역법원 4개
- 교육센터 1개

- 지역법원(13개) : 독일 4개(뮌헨,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멘하임),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란, 네덜란드 헤이그, 벨기에 브뤼셀, 오스트리아 비엔나, 포르투갈 리스본,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 광역법원(4개) : 라트비아 리가, 스웨덴 스톡홀름, 에스토니아 탈린, 리투아니아 빌뉴스 → 4개 법원 모두 노르딕 5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과 발틱 3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관할

## 2 EU 통합특허법원 제도 개요

[2심제 : (1심) 중앙/지역·광역법원 → (2심) 항소법원]

- ①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 및 기존 유럽특허(Opt-out된 경우는 제외)의 무효, 침해 등에 대해 심리하나, 회원국 특허청에서 직접 받은 특허에는 관할권이 없음
- ② 통합특허법원의 담당사건(UPCA §32①) : (a) 특허침해 금지·예방 소송 및 실시권에 대한 반소, (b)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 (c) 가처분과 금지명령 소송, (d) 특허무효 소송 및 (e) 무효 반소, (f)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g) 특허허여 이전의 발명사용 또는 선사용 관련 소송, (h) 실시권의 보상을 위한 소송 등
- ③ 통합특허법원의 관할(UPCA §33) : 무효&비침해 확인-중앙법원 / 침해-지역, 광역법원

중앙법원과 지역·광역법원의 관할

구분	원칙	반소, 사건이송, 관할변경 등
중앙법원	무효 및 비침해 확인 (UPCA §33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소송에 대한 무효반소 시 무효반소를 중앙법원에 이송하거나 침해소송까지 이송 가능(당사자 동의 필요)(UPCA §33③)</li> <li>• 광역법원의 3개 이상 지역에서 침해발생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중앙법원으로 이송(UPCA §33②)</li> <li>• 중앙법원에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면 침해소송을 중앙법원에 제기 가능(UPCA §33⑤)</li> </ul>
지역, 광역 법원	특허침해 금지·예방 소송, 가처분, 금지명령, 손해배상 등(UPCA §3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소송에 대한 무효반소 시 지역, 광역법원에서 무효를 판단하려면 기술판사 필수 배정(UPCA §33③)</li> <li>• 침해소송 제기시 중앙법원의 비침해확인소송은 당연 중지(UPCA §33⑥)</li> </ul>

- 중앙법원(UPCA §33④) : 무효 및 비침해 확인 관련 소송[§32①(b), (d)] 사건 담당 → 다만, §32①(a)에 따른 침해소송이 지역, 광역법원에 이미 제기된 때에는 비침해 확인 및 무효[§32①(b), (d)] 사건을 동일한 지역, 광역법원에 제기 가능
  - 지역, 광역법원(UPCA §33①) : 침해관련 소송[§32①(a), (c), (f), (g), (h)] 사건 담당(a) 실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발생한 지역 또는 (b) 피고의 주소, 거소,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 해당 계약국 내 지역, 광역법원이 없는 경우 중앙법원에 침해소송 제기(UPCA §33①)
  - 어느 하나의 법원에서 계속중인 지역법원, 광역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1심법원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UPCA §33②)
  - 광역법원에 소속된 지역 중 3개 이상의 지역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중앙법원으로 이송(UPCA §33②)
  - §32①(a)에 따른 침해소송에 대해 §32①(e)에 따른 무효 반소 가능(UPCA §33③) → 지역, 광역법원은 법원 재량으로 3가지 중 하나의 조치[(a) 기술판사 배정, (b) 무효 반소를 중앙법원에 이송, 침해소송은 중지 또는 계속진행, (c)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사건을 중앙법원에 이송]
  - §32①(d)에 따른 무효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32①(a)에 따른 침해소송은 지역, 광역법원 뿐 아니라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중앙법원에도 제기 가능(UPCA §33⑤)
  - §32①(b)에 따른 중앙법원에 제기된 비침해 확인소송은 소송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역, 광역법원에 §32①(a)에 따른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연중지(UPCA §33⑥)
  - 양 당사자는 통합특허법원의 모든 사건을 중앙법원을 포함하여 본인들이 선택한 법원에 제기하는 것에 동의 가능(UPCA §33⑦)
- ④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모든 UPCA 계약 비준국의 영토에 적용(UPCA §34)
- ⑤ 언어 : 1심 중앙법원은 특허된 언어를 사용(UPCA §49⑥), 항소법원은 1심 법원 언어 사용(UPCA §50①)
- ⑥ 비용 : 무효 20,000€, 침해 11,000€ + 추가비용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court/legal-documents/134>)



비용

### 3 EU 통합특허법원 옵트아웃(Opt-Out) 제도

- ① 기존 유럽특허는 **통합특허법원 관할배제(Opt-Out)**를 신청해야 제3자가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각 국가별 법원에만 무효,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UPCA §83③)
  - 상대방이 이미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배제(Opt-Out) 신청 불가(UPCA §83④)
- ② 개별 국가 법원에서 소송 진행 전에는 **Opt-Out 철회(Opt-In)**도 가능(UPCA §83④)
- ③ 기존 유럽특허는 UPCA 발효 후 7년의 전환기간(추가 7년 갱신 가능) 동안에는 Opt-Out 신청이 가능하나, 전환기간 종료 후에는 Opt-Out 불가하여 UPC만 전속관할권을 가짐(UPCA §83①)

### 4 기술판사 : 기술분야에서 자격과 경험을 갖춘 기술판사 제도 운용

\* 기술판사 제도는 유럽 내에서 독일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음

- ① 1심법원(중앙, 지역, 광역법원) : 모든 재판부는 체약국 내 **다양한 국적의 판사**로 구성(UPCA §8①)
  - **중앙법원** : 서로 다른 국적의 **법률판사 2인 + 기술판사 1인**으로 구성(UPCA §8⑥)
  - **지역, 광역법원** : **법률판사 3인(해당국 국적 2인 + 타국 국적 1인)**으로 구성(UPCA §8③, ④)
  - \*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광역법원은 기술판사 1인을 추가** 배정(UPCA §8⑤)
- ② **항소법원** : **다국적 판사 5인(서로 다른 국적 법률판사 3인 + 기술판사 2인)**

### 5 대리인 제도

- ①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는 **본인 소송을 금지**(UPCA §48)하는 규정을 두어 **변호사(lawyer)/유럽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 강제주의**를 명확히 하고 있음
- ② UPCA 비준국 법원에서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 또는 EPC §134에 따라 유럽 대리인의 자격\*이 있고 **유럽특허소송자격증\*\***을 갖춘 **유럽특허 변리사**가 대리인 자격 소유(UPCA §48①②)
  - \* 체약국 국적자이고 체약국에 사업체 또는 고용업체가 있으며, 유럽자격 시험(청구항 작성, 유럽특허출원, 의견서-이의신청서 작성, 법률서식 작성 등 특허실무 + 1개 이상의 기술자격 시험)을 통과
  - \*\* 프랑스 Université de Strasbourg의 유럽특허소송과정, 독일 Heinrich Heine Universität Düsseldorf의 유럽특허소송과정, 이태리 University Politecnico di Milano의 지식재산 과정 이수
  - 당사자의 대리인들(변호사, 유럽 특허변리사)을 돕는 특허 변리사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음(UPCA §48④)
- ③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의뢰인이 통합 특허법원에서의 소송 절차나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한 경우, 그 조언을 구하고 제공한 것에 관한 **의뢰인과 변호사, 변리사 사이의 모든 비밀 교신에는 비공개 특권이 부여**되고 해당 비밀 교신은 **통합특허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에서 비밀로 유지**됨(UPCR §287①)

## 6 침해금지 및 증거수집 제도

- ① 통합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피고 뿐만 아니라 침해 혐의자가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중개자에 대해서도 **침해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UPCA §62①)
- ② 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의심 물품이 상거래 경로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침해 의심 물품의 몰수나 인도를 명령**할 수 있음(UPCA §62③)
- ③ 원고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는 경우, 통합특허법원은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UPCA §62③)
- ④ 독일식의 증거제출명령 제도와 프랑스식의 증거보전(Saisie) 제도의 2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원고의 권리를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 규정

### 통합특허법원의 증거제출명령과 증거보전 제도

증거제출명령 (UPCA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사자 신청)</b> 자신의 청구를 지지하기 위해 <b>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증거</b>를 제시한 당사자가 신청</li> <li>• <b>(제출명령)</b>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된 은행 업무, 재정, 거래 서류 등도 대상에 포함</li> </ul> </li> </ul>
증거보전제도 (UPCA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기)</b> 소송 도중 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li> <li>• <b>(법원허가)</b>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b>상대방의 동의와 무관*</b>하게 침해 증명을 위한 증거를 집행관을 통하여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증거보전 조치를 허가 가능</li> </ul> </li> <li>• <b>(범위*)</b> 침해 물품 상세 정보, 견본, 재료, 설비, 문서, 디지털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밀, 개인정보, 기밀 등은 보호를 위해 특정인 접근만 명령 가능</li> </ul> </li> <li>• <b>(독립적 전문가)</b> 당사자 본인은 <b>현장 출입이 불가</b>하므로, 이를 대리할 전문가를 지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li> <li>• <b>(공탁)</b>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b>일정 금액 공탁</b></li> </ul>

## 7 손해배상액 결정(UPCR §125~143)

- ① 침해 및 유효성 모두에 관하여 **최종 본안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손해배상액 확정결정을 위한 절차개시를 청구**할 수 있음(UPCR §125, 126)
- ② 손해배상액의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함(UPCR §131)
  - (a) **본인이 요청하는 배상액(손해배상액, 실시권료, 경제적 이익)** 및 그에 대한 이자
  - (b) 기초로 하는 사실 및 경제적 손실액 또는 **패소한 당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액** 산정의 표시
  - (c) 기초로 하는 증거
  - (d) **본안판결의 항소 여부**에 관한 표시
  - (e)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산정액

# EU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도입에 따른 전략

## 1 단일의 유럽 지재권 시장이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에서 NPE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 유럽특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 영국(브렉시트), 스페인, 크로아티아(단일특허 미가입)은 EPO에서 특허결정을 받더라도 각 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를 받고 각 국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3 4개 이내 국가에 특허가 필요 : 기존 제도 활용 (vs) 유럽 전역에 시장이 형성 + 크고 강한 권리가 필요 : 새로운 단일특허 제도 활용 → 비용 대비 효과 고려 필요

- ⇒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될 가능성,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 Opt-Out 신청을 고려해야 함
- ※ Sunrise Period('23.3.~'23.5.) 기간동안 250,000건 이상이 관할배제 (Opt-Out) 신청(출처 : 유럽특허관)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유럽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 제도**



**특허청**  
특허제도과